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0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 강유정·김영배·김남희

서미화 · 김한규 · 송재봉

김유덕 • 박 정 • 오세희

한준호 • 박홍배 • 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은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 조사할 수 있고, 사건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등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인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 국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둔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1항에"를 "제29조에"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신고 사실의"를 "신고 사실 등의"로 하고, 같은 조제6항 중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를 "참여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술인보호관에게 직권으로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및 조사절차의 종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를 "제29

조에 따른 조사 결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
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 략)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8
	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에 사무국을 둔다.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	
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한다.	
1. <u>제29조제1항에</u> 따른 예술인	1. <u>제29조에</u>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	
폭력에 관한 조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u>신고 사실의</u> 조사) ① ~	제29조(신고 사실 등의 조사) ①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	6
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저 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 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 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참여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
<u>동</u>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
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
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술
인보호관에게 직권으로 조사하
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및 조사절차
의 종결 등 필요한 사항에 대
의 종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
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 제29조에 따른 조사
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 제29조에 따른 조사
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 제29조에 따른 조사
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 제29조에 따른 조사

② ~ ⑤ (현행과 같음)